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제415~pp (전화번호)	건 결 규 정 전 결 조 사 함
처리기간	결재 1977. 6. 30 제2부시장	시 장
시행일자	6/6	
보존년한		
보조기관	제2부시장 전결 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과장 외정중	법무담당관
기안책임자	김광선	김정길
경수참조	유신조 각안참조	발신 통계

계 목 도시계획 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

(제1안)

고시제 702호

내부결재

1. 당시에서 시행중인 종합버스 터미널 구변의 건물물의 규모와 외관을 통제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며
2. 남북순환도로 일부 구간 중 좌도에서 5~10m 울벽위에 위치한 토지 (관악구 봉천동 170번지 부근)에 대하여 관악구 봉천동 428-1 호 문범외 23인으로 부러 2종 미관지구를 4종 미관지구로 변경 건립이 있음
3. 동 지역의 기본 문도 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미관지구 변경 (2종 → 4종) 하고자
4. 본건 도시계획법 제10조 제정에 의한 건설부 고시제41호 (민.3.16) 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,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나

정서
관인
발송

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본사항 당시 제 8차 (77. 6. 24)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되었습니다.

첨 부 1. 도시계획위원회상 회의록 1부

2. 관계 도면 1 부

(제 2 안)

도시계획사 1977. 6. 29 제 191 호	심 사	4 법 제 4 장	법 부	1 부
		2 번		

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호

도시계획 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(77. 3. 16) 주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면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구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.

1977. 6

서울특별시장

가. 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 도시

구분	순위	지구명	종별	기 점	종 점	연장	비 고
지정	35	노 선 미관지구	2종	사당동	구로동	2,500 ^m	
변경	35	"	2종	"	"	2,000 ^m	일부구간 4200로 변경
신설	93	"	4종	사당동 454	불천동 산 6629	500 ^m	
"	61	"	2종	학동 249 (영동도지구 지구 94 부리)	동작동산29	3,000 ^m	도로 12 ^m



신설	62			반포동 산 45 (영등포지구획지 456 부락)	반포동 273 (영등포지구획지 46 부락)	900 [㎡]	도로양쪽 12m
"	63	"	"	반포동 181 (영등포지구획지 270 부락)	반포동 225 (영등포지구획지 161 부락)	290 [㎡]	"

별첨 도면 성략.

(제 3 안)

수 신 신철부장관 발신시장
제 목 갈 음

1. 당시 도시계획 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을 도시
계획법 제 12조 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(77.3.16) 규정 에 의거
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 도시와 같이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

첨 부. 1. 고시문사본 및 도시 1부.

2. 관계 도면 1부.

(제 4 안)

수 신 수신처장조 발신시장
장 조 도시정비과장
제 목 갈 음

1. 당시 도시계획 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을 별첨
고시문사본 및 도면 도시와 같이 고시 하였기 통보 하니
관계 도시를 정리하는 동시 유관 과에 통보 하여 토지도
유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, 건축대지 증명 등
제반 증명 발급에 착오 없기 바라며,

2. 도시계획법 제 19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보고
하기 바랍.

첨 부.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

(제 5 안)

수 신 관악구 봉천동 428-1 오훈범 발신시장
제 목 갈 음:

1. 귀하께서 77.6.2자로 양시에 제출한 미관지구 변경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악구 봉천동 170번지 부근의 미관지구 변경 (2종 → 4종) 요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문서인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합니다.

첨 부.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

(제 6 안)

수 신 총부처장관 (시: 문화관광부)

봉천시(국)장

제 목 관(시)보 개재 의뢰

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개재 의뢰하오니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개재 구분: 고시

나. 관(시)보 개재 진명: 도시계획미관지구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

다. 법적 근거: 도시계획법 제12조

첨 부. 고시문사본 2부 (1부) 끝.



청계천7가재개발제1 및 제2지구

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~~결정~~서

2시/203

1977. 5. 29.

시행자

토지소유자대표

흥인개발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영갑